

<p>推進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地方自治法 第68條第1項 및 서울特別市議會請願規程 第10條第1號에 依據 서울特別市長이 處理함이 妥當하다고 인정되므로 서울特別市長은 서울特別市文化財保護條例 第4條 및 同條例 第7條의 规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文化財委員會의 충분한 審議를 거쳐 處理하고 關係人에게 그結果를 通知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内容은 配付하여 드린 書面으로 提案說明에 갈음하고자 합니다.</p> <p>존경하는 委員 여러분, 本委員이 提案하는 建議文을 滿場一致로 採擇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p>○委員長 李詰鎬 그러면 本 請願에 대해서 梁元模委員이 發議하신 意見書 採擇案 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의 異議가 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異議가 없으므로 梁元模委員이 發議하신 意見書採擇案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하겠습니다.</p> <p>(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임진왜란시여장군밥보시할머니문화사업추진요청에관한청원에대한의견서</p> <p>임진왜란시여장군밥보시할머니문화사업추진요청에관한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인이 주장하는 밥보시 할머니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후손들이 높이 받들어 기리는 것은 마땅하나, 기념사업의 추진을 위한 관계문현등, 충분한 고증자료가 없는 현 시점에서 다만, 구전으로 전래되는 내용만을 토대로 하여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청원규정제10조 제1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관계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 하시기 바랍니다.</p> <p>.....</p>	<p>3. 서울特別市放送通信高等學校手當支給條例廢止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14時 56分)</p> <p>○委員長 李詰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放送通信高等學校手當支給條例廢止條例案을 上程합니다.</p> <p>(議事棒 3打)</p> <p>먼저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p> <p>○中等教育局長 權榮燦 서울市教育廳 中等教育局長 權榮燦입니다. 서울特別市放送通信高等學校手當支給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p> <p>현행 서울特別市放送通信高等學校手當支給條例는 放送通信高等學校에 兼任되는 教職員에게 支給되는 各種 兼任手當의 종류를 規定한 것으로서 兼任手當은 公務員報酬規程 第32條 및 地方公務員報酬規程 第31條의 規定에 兼任機關의 長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教育規則으로 정하는 것이 妥當하여 이 條例를 废止하려는 것입니다.</p> <p>主要骨子는 서울特別市放送通信高等學校手當支給條例를 废止하는 그린 内容이 되겠습니다.</p> <p>根據는 地方自治法 第15條 公務員報酬規程 第32條 및 地方公務員報酬規程 第31條에 根據한 것입니다. 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p> <p>○委員長 李詰鎬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p> <p>○專門委員 鄭文孝 專門委員 鄭文孝입니다. 서울特別市放送通信高等學校手當支給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p> <p>.....</p> <p>(報 告)</p> <p>1. 제안경위</p> <p>본 조례(안)은 1993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p> <p>2. 제안사유</p> <p>현행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겸임되는 교직원</p>
---	--

(第11回－文化教育第3次)

<p>에게 지급하는 각종 겸임수당의 종류를 규정한 것으로써 겸임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겸임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p> <p>3. 주요골자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를 폐지하고, 동 규정을 교육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함.</p> <p>4. 근 거 가. 지방자치법 제15조 나.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p> <p>5. 견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는 1987. 9. 25 조례 제2215호로 제정되었고, 그 조례는 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제1조 목적과 제2조 수당의 종류 및 제3조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 겸임수당에 의거 공무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직에 겸임되는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겸임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위 법령에 위임된 근거규정을 정확히 밝혀, 규칙으로 제정, 탄력성 있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폐지와 규칙제정 시기를 일치시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특별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고 사료됨. <p>이상 報告 마치겠습니다.</p> <p>○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본件에 대해서는 먼저 質疑하실 委員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바랍니다.</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質疑와 答辯을 終結하고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放送通信高等學校手當支給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hr/> <p>(參 照)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p> <p>서울특별시조례 제2215호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4. 서울特別市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15時)</p> <p>○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을 上程합니다.</p> <p>(議事棒 3打)</p> <p>먼저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p> <p>○中等教育局長 權榮燦 中等教育局長 權榮燦입니다. 서울特別市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p> <p>廢止理由는 本 條例는 서울特別市 中·高等學校入學對象者 中 特출한 才質은 있으나 學費負擔이 어려운 者에게 奖學金을 支給하기 위하여 그 資格의 要件과 選定, 支給方法을 規定하는 것으로 公·私立 中·高等學校의 學生의 奖學金에 關한 事項은 奖學金施行規則 第</p>
--	---